##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정 2014. 11. 24

개정 2015. 04. 02

개정 2016. 06. 03

개정 2017. 11. 14

개정 2020. 08. 13

개정 2022. 10. 31

[에너지사업기획부] 02-2657-1311]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및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회사"라 한다) 의 임원·직원 등(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며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을 말한다.
- 2.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 3. "직무발명"이란 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4.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 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 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발명
- 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직원 등을 말한다.
- 6. "출원유보"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 7.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란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8. "발명부서"라 함은 발명자가 속한 부서로 기술이전 시 발명성과품의 인계 및 활용에 따른 성과 분석과 기술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9. "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회사는 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직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직원 등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회사가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 제4조 (발명의 신고) ①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 1 및 별표 2 서식에 따른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을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직원 등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안규정 제3장(제안의 절차)에 따라 채택된 제안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을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제안자는 별표 3 및 별표 4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발명신고서와 채택제안양도증을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제4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는 별표7의 발명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 ③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직원 등과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승계시점 등) ①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②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직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 제7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 권관리 주관부서에 별표 8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 ②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소속 부서장에게 별표 9 서식에 의거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 (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 ② 발명자가 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이 경우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 제9조 (지식재산권심의 위원회 설치)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심위위원회"라 한다)와 지식재산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서 단장(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4인 이상의 본사 처, 실,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평가를 위하여 사내 위원수(위원장 제외)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외부전문가의

평가료 지급기준은 별표15에 따른다. <개정 2020.08.13>

-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이 소속 된 부서의 부(차)장급으로 한다
- 3. 간사는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 부(차)장급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시는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의 지식재산권관리 담당자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4. 감독기관 공무원은 위원회 참여를 금지한다.<신설 2020.08.13>

####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 3. 직무발명의 출원(PCT국제출원 또는 각국 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 5.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 8.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서 박탈한다.<사설 2020.08.13>
-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회의록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 3. 발언요지 및 의결 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8.13>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히 의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7.11.14.>
- ⑦ 위원장 및 위원들은 위원회 시작 전'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며 외부전문가의 대리참석은 금지한다. <신설 2020.08.13>
- 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08.13>

##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 제13조 (출원 등) ①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발명의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 출원을 하며,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리사를 선정하여 업무를 대리 수행 할수 있다
    -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 2. 지식재산권의 이의신청 및 제소에 관한 업무
    - 3.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자문
- 제14조 (비용부담)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제5장 보 상

-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 3. 실시·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별표 5,6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원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출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7.11.14>
- 제16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 직원과 타 회사 직원의 공동발명일 경우 우리회사 직원에 한하여 지분율과 상관없이 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 제17조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 인에게 지급한다.
  -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 받은 보 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인사상의 특전) ① 발명의 내용 및 그 효과가 아주 우수하여 등록 보상 1~3등급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발명 및 고안자에 대해서는 제안규정 제20조(인센티브)와 동일하게 인사규정상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가요소 중 등급별 기준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다. 단, 1~3등급 제안과 동일 내용일 경우 1개만 적용한다.
  - ② 발명 및 고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권리 지분에 따라 등급별 기준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다.

## 제6장 기술이전 관리

제20조 (적용범위) 기술이전에 관한 관계법령, 협정, 공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신설 2016.6.3>

- 제21조 (기술이전 대상기술) 보유 기술의 기술이전 대상은 아래와 같다.<신설 2016.6.3>
  - 1. 지식재산권 및 Know-how
  - 2. 기기Setting, 설계, Application 지원 등의 제반 기술용역
  - 3. 자체 고유기술력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기술
- 제22조(기술이전 업무절차) 보유 기술의 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며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6.6.3>
- 제23조(기술이전계획서 작성) 발명부서 당해 발명자는 기술이전 사항 발생 시 기술이전계획서를 [별표 11]과 같이 작성하여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16.6.3>
- 제24조(사전심의) ①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는 접수된 기술이전계획서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기술이전 여부를 심의한다.<신설 2016.6.3>
  - ②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6.3>
    - 1. 이전기술명 및 연구과제명
    - 2. 개발경과 및 투입예산
    - 3. 기술이전 내역
      - 가. 기술이전 합목적성 및 기대효과
      - 나.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 다. 기술이전 방법 및 일정계획
      - 라. 기술이전 업체선정(안) 및 사유
      - 마. 기술료 및 기술이전지도비 산정
    - 4. 이전업체 선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제25조 (기술이전계획서 승인 및 보고)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제24조에 의하여 심의된 기술 이전계획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한다. 단, 경영상 중요한 사안일 경우 사장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신설 2016.6.3>
- 제26조 (공고)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제25조에 의하여 결정한 기술이전 기술을 공사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하여 기술이전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9조 제2항 1호와 같은 경우는 공고 절차 없이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6.6.3>
- 제27조(희망업체 접수 및 설명회) ①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기술이전 공고 후 당해 발명자의 협조를 얻어 기술이전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대상업체가 제한적이거나 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각 업체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할 수 있다.<신설 2016.6.3>
  - ②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별표 13]의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제28조(대상업체 평가) ①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희망업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를 작성한다.<신설 2016.6.3>
  - ②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이전 기술의 완성도 및 연구투자비의 규모에 따라 [별표 14]의 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최적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수 있다. 단, 평가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신설 2016.6.3>
  - ③ 평가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4인 내외로 구성하며 관련분야의 지식을 가진 공사내 연구원 및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교수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6.6.3>
- 제29조(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술이전 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6.6.3>

- ② 대상업체 선정은 다음의 선정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6.3>
  -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 될 경우에는 개발에 참가한 업체에게 우선 허여할 수 있다.
  - 2. 기술개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업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
  - 3. 공사와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경쟁적 위치에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
  - 4. 기타 관련 법규 및 공사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평가기준표 평가점수가 총점의 합이 60점 이하 일때는 선정기관 대상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한다.<신설 2016.6.3>
- 제30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 이전계획 및 이전 대상업체 선정(안)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6.3>
  - 1. 기술이전계획서 심의사항 이행의 적정성
  - 2. 기술이전 대상 업체 선정의 적정성
  - 3. 기타 주요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지식재산권 관련사항, 예상매출액 등)
- 제31조(시행) 제30조의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경영상 중요한 사안일 경우 사장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신설 2016.6.3>

- 제32조(기술이전계약의 체결)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는 선정된 기술이전업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신설 2016.6.3>
  - 1. 계약기간
  - 2. 기술 실시권의 허여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3. 시작품 제작 및 제품 생산에 관한 사항
  - 4. 기술료, 기술이전지도비 및 그 징수방법
  - 5. 판매수입 계산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6. 이전기술에 관련된 개량기술 또는 부가기술의 지식재산권 관련사항
  - 7. 기타 생산제품의 개발자 표시 등에 관한 사항 등
- 제33조(기술이전) ①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계약체결 후 실시권자에게 기술을 이전한다. <신설 2016.6.3>
  - ②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사항은 기술이전 이전에 권리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6.6.3>
- 제34조(실시권의 허여)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장은 실시권 허여 시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전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신설 2016.6.3>
- 제3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기간으로 하며, 재계약 또한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6.3>
  - ② 갱신주기는 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 잔여 권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신설 2016.6.3>
  - ③ Know-how계약은 특허에 준하되 기술의 지속성, 독점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16.6.3>
  - ④ 특허, Know-how가 병용된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는 전체 기술 중 특허, Know-how의 비중을 고려하여 상기 1,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신설 2016.6.3>
  - 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갱신을 원할 경우 본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신설 2016.6.3>
  - ⑥ 기술료 협의 등으로 계약갱신이 지연되는 사이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만료 이후 갱신 시까지는 기존 계약서를 준용하고 추후 갱신계약서에 따라 정산한다.<신설 2016.6.3>
  - ①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기존계약서상 미진한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6.6.3>

- 제36조(기술료 산정방식) 기술료는 계약당사자간 상호협의를 통해 기술개발투자비 회수를 고려하여 아래 산정방식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결정한다.<신설 2016.6.3>
  - 1. 선급금(Advance Payment): 기술이전기관이 기술도입과 동시에 지불하는 대가로서 기술 개발투자비의 일부 회수 및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 가. 선급금은 통상 투입연구비의 20%이하로 하되 공고에 의한 경우는 신청서 제출서류에 명기한 요율을 적용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나. 공고에 의하지 않은 기술이전의 경우, 선급금은 기술의 상품화를 위해 지불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2.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일정기간(주로 1년)동안에 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로서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이 있을 수 있다.
    - 가. 생산 또는 판매된 수량 등에 단위당 요율을 곱한다.
      - o 대(unit), 톤(ton), Kg, cc(량, 부피) 등
    - 나. 매출액을 기초로 하는 방식
      - ㅇ 매출액 \* 요율(%)
    - 다. 허여하는 기술이 수입대체품으로 도입자에게 부품의 성격으로 사용될 때
      - ㅇ (제품가격 수입부품가격) \* 판매된 수량 \* 요율(%)
    - 라. 요율은 연간 매출액의 1~5% 범위로 하되 공고에 의한 경우는 신청서 제출서류에 명기한 요율을 적용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3.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지급
- 제37조(기술료의 수수) ① 기술료는 회계결산 및 행정소요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해 1월 31일 이내 수수토록 한다. 단, 계약이 년 중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까지의 경상 기술료는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수토록 한다.<신설 2016.6.3>
  - ② 기술료는 현금수수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의해 현금이외의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6.3>
  - ③ 기술이전 기관의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지도 인원 파견은 기술이전 계약서상에 근거하거나 별도의 사전 상호 협의 하에 실시한다.<신설 2016.6.3>
  - ④ 수수한 기술이전 지도비는 기술료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사후 처리한다.<신설 2016.6.3>

## 제7장 보 칙

- 제38조 (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적용한다.
- 제39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0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41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2조 (퇴직 등 후의 취급) 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3조 (긴급출원) 지식재산권관리 주관부서는 특허법 제36조의 선원주의에 의해 선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본부장의 승인으로 사전 심의없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으며 출원 후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44조 (이해충돌방지) 지식재산권 직무 담당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권리 승계, 보상, 기술이전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직무수행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적이해 관계자의 정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3조, 그리고 신고 및 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의한다. <신설 2022.10.31.>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이 규정 개정 전에 실시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건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한글 : 영문 :					
	성 명	지분(%)	소속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발 명 자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발명의 분류	□ 특허	□ 실용신인	□ 기타(	)		
발명의 종류	□ 직무발명		□ 자유빌	분명		
발 명 개 요						
발명의 현단계			!행중 □ 연구개 는 스트 결과 기술실현성			
사업화	- 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	부.	☐ YES	□ NO		
	위의 발명을 지식재산권관리	리규정 제4조	드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지식재산권관리부서장 귀중						
첨 부	발명과 관련된 도안, 사진 및	기타 자료				

		양	도 증	
발명의 명칭	한글 : 영문 :			
출 원 번 호 (등 록 번 호)				지분율(%)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양 도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중 포 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야 스 이	회사명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표이사	
양 수 인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귀중

	채 택 제 안 발 명 신 고 서					
제안의 명칭	한글 : 영문 :					
	성 명	지분(%)	소속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제 안 자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제안의 분류	□ 특허	□ 실	!용신안 □ 기티	-( )		
제안의 종류	□ 직무제안		□ 자유	제안		
제 안 개 요						
제안의 현단계	□ 아이디어단겨 □ 시제품제작중		구개발진행중 □ 연- 제품 테스트 결과 기술실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 YES	□ NO		
	위의 제안을 지식재신	<u></u> - - - - - - - - - - - - -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		
			년 5	<u>열</u> 일		
			신고(대표)자 :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지식재산권관리부서장 귀중						
첨 부	제안과 관련된 도안, 사	진 및 기타	자료			

[별표 4]

		채 택 제	안 양 도	증	
제안의 명칭	한글 : 영문 :				
제 안 번 호 (등 록 번 호)					지분율(%)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양 도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양 도 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야 스 이	회사명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표이사		
양 수 인	주 소				

양도인은 위 제안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귀중

## 발명 보상 기준

## 1. 출원 보상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비 고
출원 보상금	300,000원	200,000원	동일 내용의 출원인 경우 1개만 적용

## 2. 등록보상 <개정 2014.8.1>

7 H	면 기 저 <b>스</b>		보 상 금	
구 분	평가점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저작권
1 등 급	90 ~ 100점	200만원	150만원	50만원
2 등 급	80 ~ 89점	150만원	100만원	30만원
3 등 급	70 ~ 79점	100만원	70만원	20만원
4 등 급	60 ~ 69점	70만원	50만원	15만원
5 등 급	50 ~ 59점	50만원	30만원	10만원
6 등 급	50 미만	30만원	20만원	5만원

- ※ 보상등급의 평가점수는 별표 7에 의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국제특허로 추가 등록 된 경우 해당 보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 3. 실시·처분 보상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양도·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이익금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한 후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 가. 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이익금의 5 ~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 나. 회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발생한 연간 이익금의 5 ~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단, 보상기간은 지식재산권 등록일로부터 5년간이며, 보상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보상금액 산출은 별표 6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실시 · 처분보상

구분	항 목	세부항목	산출기준		
		경상적 지출	당해 발명을 위해 사용된 개발비 (인건비, 여비, 용역 및 위탁연구비, 제경비 등)		
	투입비	자본적 지출	당해 발명을 위해 구입 사용한 장비(구매, 제작 등) 등에 투입된 총투자 비용		
실시보상금	이 익 액	경비절감 또는 이익증대 효과 공	제시된 효과를 기초로 하되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검토 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의결 - 경비절감: 인건비 등의 경비절감 및 구매 대체 효과에 대한 적절한 산출방법을 적용 하여 작성하고 입증자료 제출 - 이익증대: 영업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하게 작성  헌이익액 = 이익액 - 투입비		
처분보상금	기 술 료		발명 건으로 업체등과 기술이전 계약으로 체결하여 받은 기술료 및 발명품을 업체 등에 대여 해주고 받 은 대여료 전액		
	처분이익액 = 기술료 - 투입비				

<sup>※</sup> 실시 보상금은 공헌이익액의 5~10%를 지급한다.

<sup>※</sup> 처분 보상금은 처분이익액의 5~10%를 지급한다.

# 발명평가기준표

발명명칭	한글 : 영문 :				
	성 명	지 분(%)	소 속	전화번호	<u>:</u>
바마기					
발명자					
평가요소		평 가	기 준		점수
기술성 (20)	낮음 (5)	보통 (10)	높음 (15)	매우 높음 (20)	
실시 가능성 (20)	실시 가능성 낮음 (5)	부분적 보완 후 실시 가능 (10)	즉시 실시 가능하나 추가적인 시설 필요 (15)	즉시 실시 가능 (20)	
독창성 (20)	직무상 당연히 착상 가능 (5)	문헌, 기타자료에 의해 착상 가능 (10)	다른 발명을 독창적 개량, 고안 (15)	극히 독창적 (20)	
경제적 가치 (20)	연간 순수익 1,000만원 미만 (5)	연간 순수익 5,000만원 미만 (10)	연간 순수익 1억원 미만 (15)	연간 순수익 1억원 이상 (20)	
기술의 수명 (10)	5년 미만 (3)	10년 미만 (6)	10년 이상 (10)		
독점성 (10)	공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 가능(이용발명) (3)	공유권리자 및 무상 실시권자 존재 (6)	완전한 독점 가능 (10)		
				총 점	
			심의위원 :		(인)

## [별표 8]

	이 의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사 번	소 속					
	주 소						
발명	병의 명칭						
신	청 이 유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20 년 월 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이의 신청 하오니 검토 후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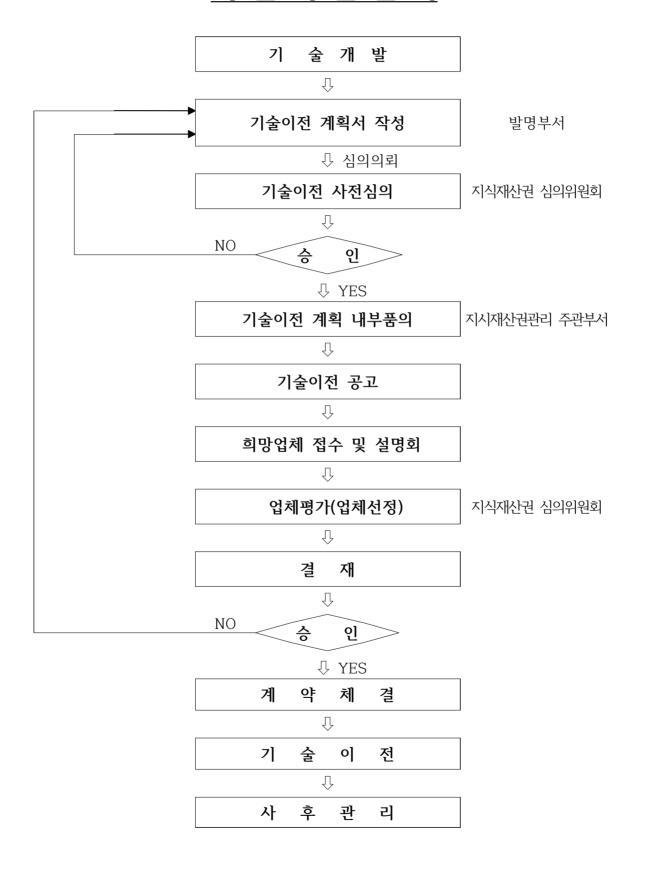
신청(대표)자 : (인)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9]

	01	의 신 청	성 결 정 통	통지 서
	성 명		생년	월일
신청인	사 번		소	속
	주 소			
발명	령의 명칭			
		결	정 사 힝	-
	청이유 (요약)			
		1		
	 절내용			
χ	 ]식재산권관리규	 ·정 제7조에 의거 2	20 년 월 일귀현	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라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권심	의위원회 위원	장 (인)

## 기술이전절차



# 기술이전 계획서

(제 23조 관련)

○ ○ ○ ○ (이전기술명)

20 . . .



## 기술이전계획서

-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필요성
- 2.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 3. 기술이전의 추진방안
- 4. 기술이전시 제공되는 기술문서
- 5. 기술이전 일정계획
  - 가. 기술문서 제공
  - 나. 기술교육
  - 다. 기술지원
-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7. 인력계획 (팀구성도, 참여율)
- 8. 소요예산 (총괄, 예산명세서)
- 9. 표준기술(전수, 사용)계약서 이외에 특수계약조건 요구사항
- 10.기술이전업체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
- 11.기술이전 제품의 예상단가 및 예상판매량
  - 가. 예상판매량 : 낙관적예측, 현실적예측, 비관적예측 등으로 구분하여 향후 5년간의 예상 판매량을 기술
  - 나. 예상판매 단가 :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명시 (신제품의 경우 외국시장 가격)
- 12.특허자료 조사 [별표 12]
- 13.본 기술개발에 실투입된 연구비(인건비, 개발보전비, 순수연구비)의 년도별 내역
- 14.기타 참고자료

## 특허자료조사표

1. 대외 특허권 이용 여부 조사

본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특허권 등을 조사하여 대외특허권을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임.

- 국내·외 특허 이용 여부 : 이용했음( ) 이용하지 않았음( )
- 이용한 주요 특허 현황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번호)	공고일자 (출원일자)	발 명 자 (출원인)	비 고
				본 기술제품이 상품화되어 국내.외 특허에 저촉되었을때 를 대비하는 조사임.

○ 본 과제와 관련 조사한 국내·외 주요 특허 현황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번호)	공고일자 (출원일자)	발 명 자 (출원인)	비	고

- 대외 특허권 침해 예방 또는 방어를 위한 특허검색 사항에 관한 의견
- 2. 가용특허 자원의 조사
  - 가용 특허자원 ( 있음( ), 없음( ))
  - 가용 특허자원이 있다면 권리별로 발명의 개요를 간략히 기술

# 기술 이전 신청 서 (제27조 2항 관련)

\_\_\_\_\_의 기술이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신청자 :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귀히		
신 청 자	대 표 자 성 명	한글 : 한문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회 사 명		전 화			
	주된영업소재지		직업및사업목적			
기 업 체 현 황	주 생 산 품		년 매 출 액			
	종 업 원 수	총 명(기술직 명, 기능직	명, 사무직 명	, 기타 명)		
	생 산 실 적	전년도 : 백만원 당년도 : 백만원	수출실적 (전년도)	만\$		
	연구조직명		총 연구예산	백만원/년		
	연구인력	총 명(연구원 명,	기능원 명)			
	연구시설	외 -	총 종	백만원		
제 출 서 류	1) 기업체 일반현황 2) 전년도 재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신용등급확인서등 포함) 3) 당해 기술이전 관련 주요 생산설비 목록(필요시) 4) 당해 기술이전 관련 유사제품 생산실적(필요시) 5) 당해 기술이전 관련 유사 연구개발 실적(필요시) 6) 본 기술이전 관련 투입인원 및 경력사항(필요시) 7) 기업화 투자계획 및 생산판매계획(국내.외) 등 8) 기술료 상환 방법 [선급금(20% 이하), 기술료율(1~5%)]					
특 기 사 항	※ 본 기술이전에 관한 의견사항 제시					

# 평 가 기 준 표 (제 28조 관련)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기준	평가	평가 점수
		10	기술연구소 보유 여부	5	
	기술인력		기술연구원 비율 (종업원 수에 대한 비율)	5	
기술능력	계束노려	20	관련제품 제조등록 여부	10	
	제조능력		관련제품 제작 및 납품실적	10	
	ulol =	10	ISO 9000 시리즈	5	
	신인도		ISO 14000 시리즈	5	
	경영상태	20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20	
재무능력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10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총 투자비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 100 = %	10	
		10	계속적 사업 능력		
λ	}업수행 능력		품질향상 능력	10	
9 1			사후관리 계획 적정성		
기스리	선급금	10	투입연구비의 20% 이하	10	
기술료	요율	10	연간 매출액의 1~5% 범위	10	
총계		100	-	100	

본인은 상기 평가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20 . . . .

평 가 자 소 속 :

직 위:

성 명: (인)

# 외부전문가 평가료 지급기준

## ○ 심의안건 수에 따른 평가료

과 제 수	평 가 료	비고
3개 이하	200,000	
3개 초과	400,000	

<sup>\*</sup>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른다.